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88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7.

발 의 자:이원택・김병주・홍성국

주철현 · 최혜영 · 장철민

김남국 · 임호선 · 정청래

임오경 · 장경태 · 김민철

오영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0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의3제1항 중 "명기"를 "명확하게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의3(조합장의 축의・부의	제50조의3(조합장의 축의・부의
금품 제공 제한) ① 지역농협	금품 제공 제한) ①
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	
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	
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	
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 해당	
지역농협의 경비임을 <u>명기</u> 하여	<u>명확하게</u>
야 한다.	<u>기록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